

< 수시 공시 >

2011.09.19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프라임배당 60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)	4,543,838,042	4,426,831,261	974.25
2	신영오딧세이 10 증권 투자회사 D-1 호(채권혼합)	4,978,289,158	5,002,950,272	1,004.95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3. 발생 일자 : 2011.09.17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